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012-10



2022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머리말

2022년도 개정세법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기술 확대,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대상 확대,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둘째,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셋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과세기반도 정비하였습니다.
- 넷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기간 변경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도 제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개정세법 해설이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어 상담과 업무처리에 안내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징세법무국장

송바우



Contents

2022 개정세법 해설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1
- 국세기본법 / 5	
- 국세징수법 / 25	
2. 소득세법	29
- 종합소득세 분야 / 29	
-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 63	
- 양도소득세 분야 / 75	
- 국제조세 분야 / 89	
3. 법인세법	97
- 법인세 분야 / 97	
- 국제조세 분야 / 115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21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9
- 공익법인 분야 / 157	
6. 종합부동산세법	169
7. 부가가치세법	177



Contents

2022 개정세법 해설

8. 조세특례제한법	213
- 국제조세 분야 / 213	
- 종합소득세·근로장려세제 분야 / 217	
-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 249	
- 양도소득세 분야 / 255	
- 법인세 분야 / 261	
- 부가가치세 분야 / 323	
- 개별소비세 분야 / 349	
9. 기타세법	353
- 개별소비세법 / 356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361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362	
- 주세법 / 370	
- 증권거래세법 / 374	
- 농어촌특별세법 / 375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석

◎ 문의사항 : ☎ (044) 204-3112~3

국세기본법

- 0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 5
- 02.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 6
- 03.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7
- 04.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8
- 05.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마련 9
- 06.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10
- 07.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화 11
- 08. 과태료 금액 조정기준 신설 12
- 09.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3
- 10. 금품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4
- 11. 과세정보 누설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5
- 12.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16
- 13.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17
- 14.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 18
- 15. 국세 외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범위 완화 19
- 16. 조세심판에 대한 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개선 20
- 17.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 허용 21
- 18.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향 22
- 19.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 등 보완 23
- 20.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 24

 국세징수법

01.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 25

02.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26

03.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상향입법 등 27

04. 체납이 있으나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사유 확대 28

✦ 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 주요 개정 내용

-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
-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
-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소액 채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법령화
-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 허용
-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상향입법 등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86호) : 2021.12.21.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4호) : 2022.2.15. 공포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87호) : 2021.12.21. 공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2호) : 2022.2.15. 공포

국세기본법

0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유류분 상속 시 납세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는 문제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상속인이 복수일 때 개별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범위</p> <p>① 일반적인 경우(② 외에 모두 적용) - 민법에 따른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p> <p>② 예외적인 경우 - (적용대상) 상속인 중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수유자, ② 상속포기자, • ③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산정방식)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p> <p>· 개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비율 :</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p>= 개별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전체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p> </div> <p>↳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재산총액 - (상속부채총액 + 상속세액)</p>	<p>□ 상속인이 복수일 때 납세의무 승계하는 세액 규정 보완</p> <p>(좌 동)</p> <p>- 예외 적용대상에 유류분을 청구한 자가 상속인 중에 포함된 경우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p>- (좌 동)</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02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

가. 개정취지

- 과세공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input type="checkbox"/> (적용범위) 판결 등의 확정에 따라 판결 등의 대상인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input type="checkbox"/> (특례기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input type="checkbox"/> 부과제척기간특례의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 판결 등의 대상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도 포함 <input type="checkbox"/> (좌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에 대한 판결·결정이 확정된 분(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부터 적용

*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03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3호)

가. 개정취지

-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과제척기간 <input type="checkbox"/> (원칙) 5년 <input type="checkbox"/> (특례) 무신고자 7년, 사기·기타 부정 행위 10년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 일부터 1년 <p style="text-align: center;">* 「소득세법」§21①23·24호에 따른 기타소득</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부터 적용

04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제47조의5 제5항)

가. 개정취지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물가·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 ** 일할분(일 0.025%)만 면제 (체납 일시부과분(3%)는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 상향조정 ○ 기준금액 상향조정 : 100만원 → 15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부터 적용(이 법 시행 전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국세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름)

05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마련

(국세기본법 제81의7 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 연기제도의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승인</p> <p>○ (연기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p> <p>* ①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때, ② 납세자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 곤란할 때,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때</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p> <p>○ (좌 동)</p> <p>○ (연기중단) 연기 사유가 소멸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p> <p>- (재개절차) 조사재개 5일 전까지 사전 통지 실시*</p> <p>*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가능</p>

06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가. 개정취지

- 자료상 명단을 공개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단공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위반자(과소 신고금액 50억원 초과) ○ 조세포탈범(조세포탈, 면세유 부정유통 및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징수법」(§114)에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단공개 대상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좌 등)</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거래 없이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공·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07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화

(국세기본법 제88조, 제89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1·2·3)

가.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국세기본법」상 과태료</p> <p>① 질문·조사권에 따른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경우 : 2천만원 이하</p> <p>②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 공여액의 2~5배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p> <p>③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2천만원 이하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현재 세부 부과기준은 국세청 훈령(「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규정</p>	<p><input type="checkbox"/>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법령화</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세부 부과기준 법령화 - 과태료를 시행령에 따라 부과</p>

08

과태료 금액 조정기준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1·2·3)

가.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다음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조정 ①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0% 범위 내 조정가능 ② 과태료를 할증하여 부과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09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가.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국세청 훈령*에 규정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3조, [별표1]</p> <p>○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과태료 - (납세의무자) 수입금액에 따라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수입금액 등*</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소득·법인세) (총)수입금액,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부가세) 1년 과세표준, (상증세) 상속·증여재산가액, (기타세목)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 간주</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 (납세의무자 외의 자) : 500만원</p>	수입금액 등*	과태료 금액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p><input type="checkbox"/>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증액(2천만원 한도) - 납세의무자 외의 자 과태료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경우 : 500만원 •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 5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
수입금액 등*	과태료 금액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10

금품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가.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훈령*에 규정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제3조, [별표2] 등 <input type="checkbox"/> 금품공여 시 과태료: 공여액에 따라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행위구분	금품상당액 기준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좌 동)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품상당액의 2배		금품상당액의 3배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품상당액의 2배	금품상당액의 3배	금품상당액의 4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은 자가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금품상당액의 5배				

11

과세정보 누설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가.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현재 국세청 훈령에 세부 부과기준 없음</p>	<p>□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p> <p style="margin-left: 20px;">※ 국세기본법 상 과태료 상한액: 2천만원</p> <p>○ (과태료 금액) 위반한 과세정보의 양에 따라 차등하되 최소 금액 이상 부과하도록 규정</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과태료 금액 =</p> <p style="margin-left: 20px;">Max [(위반 건수* × 50만원), (500만원)]</p> <p style="margin-left: 20px;">* (건수산정) 1인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하되, 1인의 과세정보가 별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정보를 각각 1건으로 함</p> </div>

12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서류송달과 관련한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사유 ○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등 기한 또는 홈택스에 해당 서류 저장 후 1개월 내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설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단,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음</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3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개정취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input type="radio"/> 1일 0.025%(연 9.125%)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input type="radio"/> 1일 0.022%(연 8.0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14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가. 개정취지

- 기한 후 신고에 적용되는 국세환급금발생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금 발생일 ○ 환급세액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 * “미신고로 결정”에 기한 후 신고 후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 ○ 환급세액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이 국세환급금 발생일임(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

15

국세 외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범위 완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관세·지방세 조세심판의 전문성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관세·지방세 관련 경력 조세심판관*의 정원 * ① 관세·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또는 ② 관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자 <input type="checkbox"/> 상임조세심판관: 3인 이하 <input type="checkbox"/> 비상임조세심판관: 3인 이하	<input type="checkbox"/> 관세·지방세 관련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상임조세심판관: (좌 동) <input type="checkbox"/> 비상임조세심판관: 6인 이하

16

조세심판에 대한 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개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구제의 내실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심판관 회의 결과에 대한 조세심판 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 심리내용에 다음의 법령해석 및 사실 판단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②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추 가〉</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추 가〉</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사유 추가 ○ 중요 사실판단의 명백한 오류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 심리내용이 다음과 다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 또는 결정례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세법 해석에 대한 예규 ③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정례 ○ 심리대상 처분의 직접근거인 법령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기존 심판청구 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심리한 경우

17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 허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가. 개정취지

- 국세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분조사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면제의 적용을 못 받은 실질 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의 경정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부분조사 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명義위장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가. 개정취지

- 명義위장 근절을 위한 포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명義위장 신고포상금 <input type="checkbox"/>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input type="checkbox"/> (포상금액) 신고건별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지급금액 상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신고건별 2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명義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9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 등 보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가. 개정취지

- 포상금 지급요건 및 절차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제보)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해당 부과처분이 확정*될 것 * 불복절차 종료 및 청구기간이 경과로 과세 처분의 취소·변경되지 않는 경우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체납액이 현금 징수될 것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제보) ① 지급을 신청할 것과 절차에 대해 안내 → ② 지급신청 → ③ 지급 ○ (은닉재산) 현금징수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안내·신청절차 없음) □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별로 다음 각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제보) 지급신청일 - (은닉재산) 현금징수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부과처분 확정을 추가 ○ (좌 동)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체납액이 징수되고, 해당 부과처분이 확정될 것 □ 탈세제보와 지급절차 일치 및 안내 기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제보·은닉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징수·납부 및 부과처분 확정 시 15일 이내 지급절차 등 안내 → ②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출 → ③ 지급 □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시기 조정 및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제보·은닉재산) 지급신청·절차 안내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제보·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2)

가. 개정취지

-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평가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 대상 <li style="padding-left: 20px;">○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li style="padding-left: 20px;">○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상 대학 -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 - 기초자료 적정성 점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이용대상 확대 <li style="padding-left: 20px;">○ (좌 동) <li style="padding-left: 20px;">○ 다음 기관의 장 (국세청장 지정요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상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좌 동) </div>

 국세징수법

01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국세 징수를 방해하는 행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 확정 전이라도 압류 가능 <input type="checkbox"/>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 하고 압류 해제 요구 시 <input type="checkbox"/> 압류 후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제사유 보완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압류 후 3개월 내(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제외)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02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국세징수법 제35조, 제55조,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하여 강제징수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절차</p> <p>❶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관할 등기소 등에 압류의 등기 촉탁 필요</p> <p>❷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압류의 뜻을 통지 <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압류 자산의 매각</p> <p>○ (원칙) 공매 또는 수의계약</p> <p>○ (예외) 거래시장을 통해 직접 매각 가능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의 압류 절차 보완</p> <p>❶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좌 동)</p> <p>❷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좌 동)</p> <p>- 가상자산 압류 시에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 * 제3자(가상자산거래소 등)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그 제3자에게 이전 요구</p> <p>• 이전요구 불응 시, 수색을 통해 압류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압류한 가상자산의 시장 매각 허용</p> <p>○ (좌동)</p> <p>○ (예외) 대상 자산 추가 - (좌 동)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압류·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03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상향입법 등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0조, 제104조, 제107조)

가. 개정취지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법률상 근거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상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 ○ 납세담보 제공 시 그 가액 (영 §20①) * 담보할 국세의 120%(단, 금전, 납세보증보험 증권 등의 경우는 110%) ○ 납세담보 제공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 (영 §20②③) ○ 예술품 전문매각 기관에게 담보 제공 요구 가능(영§75⑥) ○ 예술품 전문매각 기관 선정 시 그 기간 및 선정 취소 등 (영 §75②⑦) * (취소사유) 기관의 부도, 파산, 고액·상습 체납자 지정 시 등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사유(영 §91) * (예외사유)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대금이 국고 귀속 시 또는 체납세액의 총당 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직접 규정 또는 위임 근거 마련 ○ 법률로 상향(법 §18) ○ 주요사항 법률로 상향* 및 위임근거 마련 (법 §20③④⑤) * (상향사항) 납세자의 제출 서류, 다른 담보 제공요구 가능 근거 ○ 법률로 상향(법 §104②) ○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법 §104⑤) ○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법 §107)

04

체납이 있으나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사유 확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증명서의 발급 제한 ○ (원칙)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세 증명서 발급 불가 ○ (예외) 아래 체납액의 경우는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징수법」에 따른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액 및 압류·매각의 유예액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징수유예액 및 압류재산의 환가유예액 - 「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수탁자(신탁회사)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체납액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대상 체납액 추가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 특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99조의 8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압류재산 매각 유예,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액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광 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박 선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고 성 희

◎ 문의사항 : ☎ (044) 204-3122~4

■ 차례 ■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01.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32
02.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3
0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34
0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35
05.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36
0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기간 확대	37
0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38
08.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정수 기준금액 조정	39
09.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40
10.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41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42
12.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신설	43
13.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44
14.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	45
1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46
1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47
17.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	48
18.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	49
19.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	50
20.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사후관리 및 취소요건 정비	51
21.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	52
22. 가상자산 교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53
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54
24.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	55
25.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56
26.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57
27.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	58
28.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기간 연장	59
2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60
30.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61
31.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추가	62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신설
-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
-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추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 2021.12.08.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20호) : 2022.2.15. 공포

01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소득세법 제21조 등)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시기('23.1.1.)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20%] ○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 ○ (시행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 취득가액) '22.1.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해당 사업자가 '22.1.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② 그 외의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2.1.1.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유예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좌 등)</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1.이후 → '23.1.1.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1. → '23.1.1.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22.1.1. 0시 → '23.1.1. 0시</p> </div>

02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 <input type="checkbox"/> (대상)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보증금등 - 단,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 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1세대당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input type="checkbox"/>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 '23.12.31.

0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가. 개정취지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 가> <신 설>	<input type="checkbox"/>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15%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input type="checkbox"/>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input type="checkbox"/>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난임시술 규정 <input type="checkbox"/>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구 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21년	'22년~
1천만원 초과분	30%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 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05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소득세법 제81조의2, 법인세법 제75조)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과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개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법인) ① 개인사업자에서 3년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또는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 <input type="checkbox"/> (요건) 제출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개인) 다음연도 6월 30일 (법인)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input type="checkbox"/> (계산식) ① 산출세액* × 5% * (개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법인) 법인세 산출세액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산정 합리화 (좌 동) <input type="checkbox"/> (계산식) max [① , ②] ① (좌 동) ② 수입금액* × 0.02% *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개인)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법인)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0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기간 확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산세) 미발급금액 x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u>7일</u> 이내 자진 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u>10일</u> 이내 자진 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0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세법 제81조의14, 법인세법 제74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①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 전체 × 1% ②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8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소득세법 제86조)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득세 부징수 기준금액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좌 동) <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09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소득세법 제150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input type="checkbox"/>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좌 등)</div> <input type="checkbox"/>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 (적용기한) '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4)

가. 개정취지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2.7.1. ~ '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 <input type="radio"/> (제출주기) 매년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input type="radio"/> (제출주기) 매월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소득금액분부터 적용

12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신설

(소득세법 제173조 제2항, 제17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가. 개정취지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p> <p><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p> <p>○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세자료 건별 20만원</p> <p>○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과세자료 건별 10만원</p> <p>*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소득금액분부터 적용

13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li style="padding-left: 40px;">〈추 가〉 ○ (한도) 월 20만원 이내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 인출 시 : 기타소득(15%)으로 과세 부득이한 인출 시 : 연금소득(3%~5%)으로 과세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회재난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 계좌 <input type="checkbox"/>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 기여형퇴직연금 <input type="checkbox"/>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input type="checkbox"/>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small>*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신설 (2022년 4월 시행)</small>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4.14. 이후부터 적용

1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이전 과세기간 납입분]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명확화 ① (좌 동) 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 ISA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

17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가. 개정취지

- 납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채권을 대손금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18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input type="checkbox"/>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대상차량)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업장 적용범위 명확화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input type="checkbox"/> (좌 동)

19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단체 지정요건 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②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 초과 <small>*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제외</small> ③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④ 1년 이상 단체 명의로 통장으로 회비·후원금 등의 수입 관리 ⑤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4.30일까지 공개 ⑥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input type="checkbox"/>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 산정방법 변경 등 ① (좌 동) ② (좌 동) <small>*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다른 공익법인·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제외</small> (좌 동) ⑥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20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사후관리 및 취소요건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의 투명성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익단체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input type="checkbox"/> 공익단체 지정 취소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장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 시 기재부장관에게 취소 요청 ① 1천만원 이상의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②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④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⑤ 단체가 해산한 경우 ⑥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이행규정 보완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 <input type="checkbox"/> 지정 취소요건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1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추 가>	<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
<input type="checkbox"/>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 <추 가>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 * 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을 관리하는 고유식별번호 - (좌 동)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적용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22

가상자산 교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83조 제7항 신설, 제20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신설, 제137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교환·입고·인출*시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식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고·인출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기축 가상자산)의 거래가액*에 교환 비율을 적용하여 양도·취득가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거래 체결시점에 코인마켓 사업자가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5항, 제216조의3, 별표4)

가. 개정취지

- 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 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제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보험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교육비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제출항목 확대 (좌 동) - 장애인 증명서류 <input type="checkbox"/> 자료집중기관 확대 (좌 동) - (장애인 증명서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input type="checkbox"/> (자료집중기관) - (연금계좌 납입액·보험료) 은행연합회·보험협회 등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교육비 등)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추 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4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input type="checkbox"/>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input type="checkbox"/> 신청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1개월 → 3개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5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가. 개정취지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 한도 적용 명확화 ○ (좌 동) -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26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금액 추계시 상한 적용 <input type="checkbox"/> (상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 (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좌 동) <input type="checkbox"/> 2024.12.31.

27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가. 개정취지

-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input type="checkbox"/> (대상) 특금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 자산 거래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제출자료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28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제31442호) 부칙 제1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근로자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input type="checkbox"/> 2021.12.31. 까지	<input type="checkbox"/> 과세유예 기간 연장 <input type="checkbox"/> 2023.12.31. 까지

2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별표3의3)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p> <p>*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p> <p>①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등</p> <p>②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 학원 등</p> <p>③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p> <p>④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p> <p>⑤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 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p> <p>⑥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p> <p>* ①~⑤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p> <p>※ 전체 95개 업종</p>	<p><input type="checkbox"/> 의무발급대상 확대 (17개 업종 추가)</p> <p>】 (좌 동)</p> <p>○ 행정사 추가</p> <p>○ 숙박공유업 추가</p> <p>○ 13개 업종 추가</p> <p>* ① 가정용 식물제품 소매업</p> <p>②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p> <p>③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유리 제외)</p> <p>④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p> <p>⑤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p> <p>⑥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p> <p>⑦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식물제품 수리업</p> <p>⑧ 가전제품 수리업</p> <p>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p> <p>⑩ 여자용 겔옷 제조업</p> <p>⑪ 남자용 겔옷 제조업</p> <p>⑫ 구두류 제조업</p> <p>⑬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p> <p>○ 2개 업종 추가</p> <p>* ①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p> <p>② 기타 통신 판매업</p> <p>※ 전체 112개 업종</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0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억원 → 1억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1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 소포배달, 골프장경기보조용역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 (좌 동) ○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적용 대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최 영 훈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수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남 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박 재 호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채 린

☎ 문의사항 : ☎ (044) 204-3137~41

■ 차례 ■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01. 금융투자결손금액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부담 완화	66
02. 채권등 취득가액 평가방법 일원화	67
03.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	68
04. 금융투자소득 관련 중소·중견기업 범위 변경	69
05.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	70
06.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 허용	72
07.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정기제출의무	73
08.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배제 신청기한 명확화	74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금융투자결손금액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부담 완화
- 채권등 취득가액 평가방법 일원화
- 금융투자소득 관련 중소·중견기업 범위 변경
-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
-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 허용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78호) : 2021.12.8.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0호) : 2022.2.15. 공포

01

금융투자결손금액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87조의4 제2항, 제87조의23 제3항)

가. 개정취지

- 확정신고 대상 축소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23년 시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 환급세액이 있는 자 ○ 비과세·세액감면은 적용받고자 하는 자 <단서 추가> ○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단서 추가> 	<input type="checkbox"/> 확정신고 대상 축소 (좌 동) -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좌 동) - 예정신고 대상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투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채권등 취득가액 평가방법 일원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3)

가. 개정취지

- 채권등 취득가액 평가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23년 시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취득가액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주식등) 이동평균법 <input type="checkbox"/> (채권등)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 - 단, 미신고 시 개별법으로 평가 <input type="checkbox"/> (투자계약증권) 개별법	<input type="checkbox"/> 채권등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개별법으로 일원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개별법 * 납세자의 평가방법 신고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3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7 제8항)

가. 개정취지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23년 시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 균등 분배(자본시장법§189②)를 전제로 펀드 전체 이익을 투자자별 좌수로 나눈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 ○ 양도소득금액 + 분배소득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별 손익에 대한 권리가 불균등한 집합투자기구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4

금융투자소득 관련 중소기업 범위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5)

가. 개정취지

- K-OTC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중견기업 판정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23년 시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 ○ 금투소득 기본공제 5천만원 및 의제취득 가액 적용 ○ 중소기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 - 중견기업 : 주식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주식 양도일 현재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5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23년 시행)	개 정
<p>□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p> <p>① 실지명의별 보유계좌 내 소득금액을 기본공제 그룹별* 합산</p> <p>* ①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5,000만원 공제) ② 기타 금투소득(250만원 공제)</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실지명의별·기본공제 그룹별 합산 소득 금액에 각각의 기본공제 적용</p> <p>③ 원천징수세액 계산</p> <p>*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 20% 적용</p>	<p>□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의제취득가액 적용</p> <p>① (좌 동)</p> <p>-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 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p> <p>* ① 주권상장법인 주식, ②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p> <p>• 단, 대주주 판단 시점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10억원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적용 제외</p> <p>※ 원천징수 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은 대주주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p> <p>② (좌 동)</p> <p>③ (좌 동)</p>

06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 허용

(소득세법 제155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23년 시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input type="checkbox"/> 대상소득 및 원천징수 기한 - 이자·배당소득 :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좌 동)
<input type="checkbox"/>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input type="checkbox"/>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구분하여 원천징수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정기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7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

가. 개정취지

- 효율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기반 확립

나. 개정내용

종 전 ('23년 시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등의 자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 ○ (요건) 국세청장의 요청 <신 설> ○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매매거래 명세서 -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명세서 - 장외거래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중개·주선, 대리 명세서 등 <신 설> <신 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제출의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 추가 <삭 제> ○ (제출의무·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 보유내역은 연 1회(2월 10일) 제출 ○ (제출자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명세서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명세서,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명세서 - 파생결합증권 이익명세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거래내역 등 자료) 2023.1.1. 이후 발생하는 거래·행위부터 적용
 * 2023.1.1. 전에 발생한 거래·행위는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적용
- (보유내역 등 자료) 2023.1.1.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08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배제 신청기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4)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23년 시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배제 신청기한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 - 단, 수입시기가 말일인 경우 수입시기 이후 3영업일까지	<input type="checkbox"/> 신청기한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차례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0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78
02.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79
03.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등	80
04. 보유·거주기간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82
05.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83
06.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84
07.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85
08.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86
09.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	87
10.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88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78호) : 2021.12.8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659호) : 2021.5.4.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0호) : 2022.2.15. 공포

0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지거래가액 9억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지거래가액 12억원
<input type="checkbox"/> 고가주택 양도차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 양도차익 × $\frac{(\text{양도가액} - 9\text{억원})}{\text{양도가액}}$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방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억원 초과분 → 12억원 초과분* * 양도차익 × $\frac{(\text{양도가액} - 12\text{억원})}{\text{양도가액}}$
<input type="checkbox"/>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frac{(\text{양도가액} - 9\text{억원})}{\text{양도가액}}$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향 방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억원 초과분 → 12억원 초과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frac{(\text{양도가액} - 12\text{억원})}{\text{양도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2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원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미보유 ○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요건 정비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미보유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 * 202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함

03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등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 제166조, 제167조의3)

가. 개정취지

-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및 정비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정비사업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소규모 재건축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관련 규정	적용 시기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소득법 §88)	20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부터 적용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 사업 범위 확대(소득법 §89②)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⑧)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④,⑤)	

관련 규정	적용 시기
상속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⑦)	20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부터 적용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⑧,⑨)	
상속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3⑤)	
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산정(소득령 §166①,②,⑦)	
<p>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소득령 §155②,③)</p> <p>등록임대사업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155⑳)</p> <p>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증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167의3⑤)</p>	2022.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4

보유·거주기간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정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민간건설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공공건설임대주택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공매입임대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5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종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제155조 제20항·제21항·제22항·제24항, 제167조의3 제1항·제4항·제7항)

가. 개정취지

- 보육지원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13①)에 따른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대상 : 가정어린이집 ○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 가정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과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 가정어린이집 → 어린이집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어린이집 이외에도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도 포함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좌 동) </div>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6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가. 개정취지

- 전월세시장 안정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특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 대상) ❶~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②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 시 매도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 ❷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❸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 (특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실거주 1년 인정(최대 1년 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2.20.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07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p> <p>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 취득</p> <p>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 이사+1년 이상 계속 거주</p> <p>㉡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요건 보완</p> <p>① (좌 동)</p> <p>② (좌 동)</p> <p>㉠~㉡ (좌 동)</p> <p>㉢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08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p> <p>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p> <p>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 이사+1년 이상 계속 거주</p> <p>㉡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요건 보완</p> <p>① (좌 동)</p> <p>② (좌 동)</p> <p>㉠~㉡ (좌 동)</p> <p>㉢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09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가. 개정취지

-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요건 강화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	○ (좌 동)
○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 2년 →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5.4. 이후 사업인정 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

10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가. 개정취지

-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말·체험영농 농지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토지로 인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021.5.4.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소득세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제조사관 김 현 석

☎ 문의사항 : ☎ (044) 204-3112~3

■ 차례 ■ 소득세법 (국제조세 분야)

01.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92

0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94

03.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소득신고 간소화 95

04.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 96

✚ **소득세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소득신고 간소화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78호) : 2021.12.08.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0호) : 2022.2.15. 공포

01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소득세법 제119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간주 특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②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 명확화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 ㉡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종 전	개 정
<p>㉓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 국외투자기구 설립지국과의 조세 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p>	<p>㉓ (좌 동)</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료제출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input type="checkbox"/> 자료 제출 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 계산서 등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이내	<input type="checkbox"/>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2022.2.15.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03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소득신고 간소화

(소득세법 제1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국내에 법인 아닌 형태로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개인 구성원의 소득신고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경우 구성원별로 (개인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 각각 적용)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②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신고 간소화 요건 신설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단체 구성원 1인이 일괄하여 소득신고 가능(비거주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법인인 구성원은 종전대로 직접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 ① 해당 단체가 구성원의 거주지국 납세자 번호 등 과세정보를 제출한 경우 ② 거주자인 해당단체 구성원이 일괄하여 소득신고하는 것을 다른 구성원이 동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구성원 일부만 동의한 경우 그 동의한 구성원에 한해 일괄신고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4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용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판단 용이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근로대가규모)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❷ (기업 규모)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 ❸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 요건 개선 ❶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외국법인과 계약상 근로대가 합이 20억원 초과 ㉡ 직전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 초과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좌 동)</div>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4.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강 삼 원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권 재 효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경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성 호

☎ 문의사항 : ☎ (044) 204-3127~30

■ 차례 ■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01.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	99
02.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100
03.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101
0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102
05.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103
0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104
0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106
08.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107
①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107
②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108
③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109
09.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110
10.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111
11.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	112
1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113
13.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규정 정비	114

01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

(법인세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가. 개정취지

- 비상장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스팩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도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스팩 존속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 스팩과 합병하는 법인은 1년 이상 사업영위 필요 ② 스팩과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0%이상 보유 요건 배제 ③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스팩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②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도 주식 보유 요건 배제 ③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 지속 요건 배제

*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상장 후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02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세법 제50조의2 신설, 같은 법 제113조)

가. 개정취지

-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 (적용대상) ①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 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03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법인세법 제60조의2)

가. 개정취지

- 사업 양수도를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 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법인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법인 범위 보완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0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납세자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좌 동)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05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2)

가. 개정취지

-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범위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연구개발업 등 - 상호주의*에 의해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이 비과세되는 국가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선급검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제44조의2 제3항, 제111조 제1항 제17호)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범위 ○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등 〈추 가〉 □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4호에 의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추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국법인 ○ 「한국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 금융기관 등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에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4.1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18038호 시행일)부터 시행

0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input type="checkbox"/>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추 가>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08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①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4항·제15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❶ 2018.2.13. 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 ❷ 2018.2.13.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 (지정방식·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칭 변경(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경과조치, 2018.2.13.) - 20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2021.12.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지정 3년, 재지정 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보완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❶, ❷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022. 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한) 2022.2.3. ** 신규(2021~2023년), 재지정(2021~2026년)

08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②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사후관리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input type="checkbox"/> 공익적 성격이 있을 것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input type="checkbox"/>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input type="checkbox"/>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5px 0;">(좌 동)</div> <input type="checkbox"/>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08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③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파목)

가. 개정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 (10% 한도 손금산입)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9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 해당 기준 조정 시 ①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②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③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가. 개정취지

-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을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을 ②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input type="checkbox"/>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① (좌 동) ②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70% → 50% ③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3호·5호)

가. 개정취지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방식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11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가. 개정취지

-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요건 강화 ○ (좌 동) ○ 2년 →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5.4. 이후 사업인정 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

1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input type="checkbox"/>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13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규정 정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

가. 개정취지

- (양도대상 법인 확대) 연결납세 제도 보완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멸실과 실질이 유사한 소각도 양도손익 환입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 사유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이연(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대손발생·멸실 ○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다른 연결법인에게 자산양도시 양도손익과세이연 허용 및 환입 사유 명확화 ○ (좌 동)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좌 동) ○ (좌 동)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석

☎ 문의사항 : (044) 204-3112~3

■ 차례 ■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01.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118

02.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119

0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120

✚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90호) : 2021.12.2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8호) : 2022.2.15. 공포

01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19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간주 특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㉕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②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③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투자기구 설립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 명확화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㉕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 ㉕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③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2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자료제출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 계산서 등 ○ (제출기한)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기한 연장 ○ (좌 동) ○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2022.2.15.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0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법인세법 제9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

가. 개정취지

-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자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input type="checkbox"/>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input type="checkbox"/> 현황자료 범위 ○ (작성 기준일) 매년 12.31일 ○ (제출내역)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사무소 기본 현황, 임차 현황, 직원 현황, 운영자금 현황 - 외국법인 본사 현황, 국내 거래현황, 국내 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 기타 연락사무소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석

◎ 문의사항 : ☎ (044) 204-3112~3

■ 차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	124
02.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	125
03.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설	126
04.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	127
05.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	128
06.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폐지	129
07.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130
08.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131
0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132
10.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특정외국법인 범위 확대	133
11. 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134
12.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135
13.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	136
14.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137
15.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138

✚ 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주요 개정 내용

-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
-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법 추가
-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설
-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순서 명확화
-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88호) : 2021.12.21.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3호) : 2022.2.15. 공포

01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가. 개정취지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기한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기준으로 조정하여 다음 기한 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경정청구 가능 - 과세표준 확정신고·수정신고 및 경정 청구 기한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기준에 의한 과세 조정가능 기한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기한 후 신고기한

02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금융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p> <p>① 국조법 제8조 제1호부터 5호의 정상 가격 산출방법*</p> <p>*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이익분할 방법</p> <p>② ①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p> <p>-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제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정상가격 산출시 활용가능 방법 추가</p> <p>① (좌 동)</p> <p>② ①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p> <p>- (좌 동)</p> <p>- 기초금융자산에 연계된 신용위험을 반영한 신용부도스왑계약의 가산율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p> <p>- 무위험 이자율에 부도위험, 유동성, 만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산율을 더하여 계산한 이자율(경제적 모델 활용)</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03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가. 개정취지

- 다국적기업그룹 내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규정(OECD 이전가격지침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 ○ (자금통합거래 정의)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관계회사*들의 개별 현금계좌를 통합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국외특수관계자 ① 그룹 내 통합계좌를 보유 : 참여하는 관계회사가 해당 통합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체 받는 방법 ② 통합계좌 없이 관리 : 관계회사 계좌 전체잔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청구하는 방법 ○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 ② 순서로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금통합대표자*에 대한 보상) 수행 기능, 부담 위험, 사용 자산 등을 고려하여 용역거래 또는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방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통합거래를 담당하는 관계회사 등 ② (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보상) 통합계좌 참여시 정상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통합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감소하는 이자비용 등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04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 및 경정</p> <p>* 제3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p> <p>○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원가 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과 차이가 날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기준으로 결정·경정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결정·경정의 예외를 인정</p> <p>○ (좌 동)</p> <p>-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정상원가 분담액을 기준으로 결정·경정 가능</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5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시 고려사항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 분석 ○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활용 가능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고려사항 추가 ○ (좌 동) ○ (좌 동) ○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6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폐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가. 개정취지

- 국제거래가격 심의 절차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기능) 국세·관세 과세가격 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 심의 <small>* 국세·관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국세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기획재정부에 조정신청 가능</small> <input type="checkbox"/> (구성) 15명 이내 민·관위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폐지 <삭 제>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을 위한 협의체 <input type="checkbox"/>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부터 적용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위원회 존속기한이 '21.6.30.까지인 점 감안

07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가. 개정취지

-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출자·차입금 배분기준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p> <p>*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 배당으로 과세</p> <p>○ (업종별 배수) 금융업 : 6배, 비금융업 : 2배</p> <p>-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고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 (① 또는 ②)</p> <p>- ①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배분</p> <p>- ②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p> <p>*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국외 원천소득 대응비용 중 배분비용)를 준용</p>	<p><input type="checkbox"/>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방법 명확화</p> <p>○ (좌 동)</p> <p>- (좌 동)</p> <p>- (좌 동)</p> <p>-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소득대비 과다이자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자의 손금불산입 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금액 손금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 조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감가상각비 + 순이자비용 〈단서 신설〉 ○ 손금불산입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 〈추 가〉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 금액 손금불산입 규정 명확화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최근 차입일 우선 -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 개정취지

- 역외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세부담률 판정기준 ○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 소득의 1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 15% 이하 →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70%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신택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특정외국법인 범위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 개정취지

- 역외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 소득의 15% 이하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 법인”에 한해 적용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등	<input type="checkbox"/>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법인과세 신택*을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추가 * 「신택법」에 따른 목적신택, 수익증권발행신택, 유한책임신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외재산 증여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input type="checkbox"/> (원칙)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input type="checkbox"/> (예외)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을 2개월 → 3개월로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당시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부터 적용

12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가. 개정취지

- 조세 정보교환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 소유자 정보의 범위</p> <p>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조합 등)인 경우 : 특금법*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 특금법에 따른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 ①→②→③ 순서로 진행 ① 법인·단체 발행주식·출자 지분 25% 이상 소유자 ②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 -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등 - 해당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와 다른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해당 법인·단체 대표자</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 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p> <p>① (좌 동)</p> <p>②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합 등 단체의 경우 : - 해당 단체 대표자·임원 또는 해당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정보</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가. 개정취지

- 거주자증명서 발급사유의 법적 근거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증명서 발급 요건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li style="padding-left: 40px;">〈추 가〉 <li style="padding-left: 40px;">〈추 가〉 ※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서식) 상 발급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그 밖의 조세조약의 적용 -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추가 ○ (좌 동)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 이외 조세 조약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의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부터 적용

14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제6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p> <p>○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제출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취득시</td> <td>취득내역</td> </tr> <tr> <td>투자운용(임대)시</td> <td>투자운용내역</td> </tr> <tr> <td>처분시</td> <td>처분내역</td> </tr> </tbody> </table> <p>〈추 가〉</p> <p>○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취득시 미제출</td> <td>취득가액의 10%</td> </tr> <tr> <td>운용(임대)소득 미제출</td> <td>운용(임대)소득의 10%</td> </tr> <tr> <td>처분시 미제출</td> <td>처분가액의 10%</td> </tr> </tbody> </table> <p>〈추 가〉</p> <p>※ 과태료 한도 : 1억원</p>	구 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구 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p>□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p> <p>○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제출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취득시</td> <td>취득내역</td> </tr> <tr> <td>투자운용(임대)시</td> <td>투자운용내역</td> </tr> <tr> <td>처분시</td> <td>처분내역</td> </tr> <tr> <td>보유시</td> <td>보유내역</td> </tr> </tbody> </table> <p>○ 보유내역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취득시 미제출</td> <td>취득가액의 10%</td> </tr> <tr> <td>운용(임대)소득 미제출</td> <td>운용(임대)소득의 10%</td> </tr> <tr> <td>처분시 미제출</td> <td>처분가액의 10%</td> </tr> <tr> <td>보유시 미제출</td> <td>취득가액의 10%</td> </tr> </tbody> </table> <p>※ 과태료 한도 : 1억원</p>	구 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보유시	보유내역	구 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보유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구 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구 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구 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보유시	보유내역																																				
구 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보유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의무) 20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2023.1.1.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15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국제거래자료 조기 제출 유인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자료</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고서별 3,0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제거래명세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p>	대상자료	과태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 제출·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수정 제출한 시점</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 감경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월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월 초과 1년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초과 2년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초과 4년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 기한 후 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한 후 제출시점</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 감경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월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월 초과 6월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월 초과 1년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초과 2년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율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율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
대상자료	과태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율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율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문 병 갑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영 선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남 궁 민

◎ 문의사항 : ☎ (044) 204-3142~5

■ 차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 관련 조문 명확화	142
0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143
03.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144
04.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	145
05.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146
06.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	147
07.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148
08.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149
0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150
10.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	151
11. 국외주식 평가 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	152
12.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153
13.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154
14.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	155
15.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	1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주요 개정 내용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 관련 조문 명확화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증견기업의 범위 확대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
- 국외주식 평가 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
-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91호) : 2021.12.21.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4호) : 2022.2.15. 공포

0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 관련 조문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4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증여재산 <input type="checkbox"/> 전환사채 전환 이익·주식 상장이익·합병 상장이익의 증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증여재산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0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 상속 시 해당 가업상속재산 가액 공제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03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가액 공제 <input type="checkbox"/> 15억원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확대 <input type="checkbox"/> 20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04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경영승계 준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업 인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 <p>*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업종 열거</p>	<input type="checkbox"/> 가업의 업종 유지의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유지로 인정 <p>* (예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05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 개정취지

- 유치원 업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input type="checkbox"/> 교육서비스업 중 사회교육시설, 직원 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input type="checkbox"/>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 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851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06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가. 개정취지

-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 피담보채무] 공제(6억원 한도) ①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③ 피상속인·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④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공제 적용대상 확대 (좌 동)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7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개인 간 거래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input type="checkbox"/> (원칙)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개인 간 거래 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2023.1.1.부터 적용)

08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2)

가. 개정취지

-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과 신고기한 명확화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증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배당을 한 날 <input type="checkbox"/>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small>* 초과배당금액에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증여재산가액</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일~5.31일 <small>※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일까지로 규정</small>	<input type="checkbox"/> 증여일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 <input type="checkbox"/> 신고기한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일까지 <small>※ 시행령에서는 삭제</small>

09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가. 개정취지

- 특정법인 거래 관련 증여세 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시 증여세 한도* * (法)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 법인세 상당액 <input type="checkbox"/> 증여세 계산방식 - [증여재산가액 -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로 계산	<input type="checkbox"/>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input type="checkbox"/> 계산방식 변경 -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증여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0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가. 개정취지

-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p> <p>○ Ma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① 재취득가액 → ② 순장부가액 → ③ 시가표준액 ② 임대환산가액 <p>-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p> $\text{임대보증금} + \frac{\text{1년간 임대료 수입}}{\text{이자율}}$	<p><input type="checkbox"/> 임대환산가액 합리화</p> <p>○ (좌 동)</p> <p>- 자산별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세분화</p> <p>① 입목 및 그 외 유형자산 :</p> $\text{임대보증금} + \frac{\text{1년간 임대료 수입}}{\text{이자율}}$ <p>②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p> $\text{임대보증금} + \sum \frac{\text{각 연도의 임대료 수입}}{(1 + \text{이자율})^n}$ <p>n :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령 상 기준내용연수까지의 잔여기간</p> <p>이자율 : 3%</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1

국외주식 평가 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국외주식에 대한 평가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자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사용 ○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산 소재국에서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② 2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기관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감정기관에 회계법인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동) ② 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2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부연납 허용 기간 <input type="checkbox"/> 증여세 : 5년 <input type="checkbox"/> 상속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업상속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 50% 미만 :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 비중 50% 이상 :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② 일반 상속재산 : 5년 	<input type="checkbox"/>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② 일반 상속재산 : 10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13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가. 개정취지

-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 허용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체부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 - 다만, 국고손실 위험이 큰 경우 제외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 ○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하여 물납 신청 허용 <p>※ 물납 신청,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14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가. 개정취지

-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자료 제공 <input type="checkbox"/> 제공자료 및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관계 등록사항 : 법원행정처장 ② 재산세 과세 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장 범위 관련 조문 정비] (좌 동) ② 특별자치시장 추가

15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증권계좌 간 거래 내역 관련 과세자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업자 자료 제출 의무 <input type="checkbox"/> 주식등의 증권계좌 간 이체 시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간 이체 내역 제출 의무 부과
〈신 설〉	<input type="checkbox"/> 주식등의 계좌 이체 자료 제출 방식 <input type="checkbox"/> (제출 기한)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제출 내용) 제출자 및 이체자의 인적사항, 이체연월일, 이체대상 주권등 종목명, 이체 수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강 삼 원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권 재 효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경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성 호

☎ 문의사항 : ☎ (044) 204-3127~30

■ 차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분야)

01.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159
02.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	160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161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	161
②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및 방법	162
③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의 사전 신청 및 배제	163
④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및 절차	164
⑤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제출 및 재지정 요청	165
⑥ 감리 업무의 내용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166
⑦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감리 업무의 위탁	167
0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168

01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9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액 관련 예측가능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 으로 사용할 의무 ○ 의무 사용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 3%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 상태표상 자산가액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 위반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 (좌 동) ○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 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의무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한 (12월말 공익법인 기준) ○ 3.31.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4.3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산서류 등 공시 ②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소득 80% 이상 및 출연재산 1% 이상 공익목적 사용, 이사구성 요건 충족, 특수관계인들의 정당한 대가없는 재산 사용 및 광고·홍보 금지 ○ 6.3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기한 합리화 ○ 3.31. → 4.3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전에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로서 2022.2.15. 당시 그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지정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요건 판단기준일) 해당 감사인 지정 과세연도의 전전년도 <input type="checkbox"/> (지정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②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및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제5항 및 별표 1·2)

가. 개정취지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 전체 지정 대상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지정선임 2년)에 균등 지정되도록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5월, 약 24개 공익법인 지정(12월말 법인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144개) <input type="checkbox"/> 지정 방법 ○ 지정순서가 빠른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 ○ 지정 순서 : ❶ → ❷ 순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전년도에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직전 자유선임기간 감사계약 未종료, 2) 감리 진행 중인 경우 ❷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 감사인 지정점수 : $\frac{\text{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1 + 3^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기간별 감사인점수: 공인회계사별 경력에 대한 가중치 반영 * n :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 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③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의 사전 신청 및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감사인 사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국세청에 신청*한 감사인에 한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요건 : ① 과거 2년 내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공익법인 감사 실무 교육(공인회계사회)을 이수 ② 과거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회계감사 수행 <input type="checkbox"/> 감사인 지정 배제 사유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사보고서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로 공소가 제기된 자 → 조치* 확정 후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 지정통지 후 2주 내 계약 미체결 → 기한 도과일로부터 1년 ③ 공익법인 감리 결과 금융위원회 등에 회계기준 위반 통보 → 조치* 확정 후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 :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경고, 주의 ④ 부당한 비용부담 등을 청구 → 조치* 확정 후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④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및 절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

가. 개정취지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절차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준일*’까지 공익법인·감사인에 지정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연도 시작 후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 매년 과세연도 시작 후 9개월 1일이 되는 날부터 약 10주간 감사인 지정 절차를 진행하며, 지정기준일까지 지정 통지 ※ 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 지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료제출) 공익법인은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9.1일부터 2주 이내에 제출 ② (사전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에 지정기준일로부터 4주 전까지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규정 사항) 공익법인·감사인의 의견제출 또는 재지정요청에 따라 다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 ③ (지정통지) 지정기준일(11월 15일)까지 해당 공익법인 및 지정 감사인에게 지정내용을 통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⑤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제출 및 재지정 요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7항)

가. 개정취지

- 지정 감사인 변경 요청 사유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제출)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직무제한* 등으로 인해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등 ❷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❸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 (재지정요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지정 요청 가능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정 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②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계법인이 출자한 공익법인인 경우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③ 그 밖에 지정 감사인이 법령등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⑥ 감리 업무의 내용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 감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감리사유) 표본 분석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 사실 통보 <input type="checkbox"/> (대상 선정 및 점검)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다음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리 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② 감리 대상 선정안 ③ 직전연도 감리 수행에 따른 시정·개선 결과 <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필요시 감사인·공익법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 요구 가능 <input type="checkbox"/>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반사항이 있는 감사인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을 금융위에 통보 ② 위반사항이 있는 공익법인등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은 주무관청 및 국세청에 통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⑦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감리 업무의 위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5항)

가. 개정취지

- 감사인 지정 및 감리 관련 업무 효율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 위탁기관 : 국세청장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이 공시한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 관련 업무 위탁기관 : 공인회계사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관련 유인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 Ma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 금액*을 합친 금액 × 0.5% <p>*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한(3개월)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합리화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2022.1.1. 이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문 병 갑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정 영 선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남 궁 민

◎ 문의사항 : ☎ (044) 204-3142~5

■ 차례 ■ 종합부동산세법

01.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 172

02.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 173

0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 174

04.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 175

05.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 176

종합부동산세법

📖: 주요 개정 내용

-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
-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449호) : 2021.9.14.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5호) : 2022.2.15. 공포

01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input type="checkbox"/>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 <input type="checkbox"/>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9.14.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02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가. 개정취지

-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판정 ○ (공동 소유) 공동 소유자 각자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다가구 주택) 1주택으로 간주 ○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 수 제외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 2년, 그 외 지역 : 3년 ** 지분, 가액未고려 ※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2022.2.15.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0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합산배제 대상 확대를 통한 종부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 가정어린이집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p style="text-align: right;">〈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li style="margin-left: 20px;">] (좌 동) ○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 ○ 시·도등록문화재 추가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공공주택사업자 ②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③ 주택조합 ④ 주택건설사업자 등 - (요건) 주택건설사업 목적 + 취득일 부터 3년 이내 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 시키지 못하는 경우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04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취지

-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① 건설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공시가격 9억원 및 전용면적 149㎡ 이하 <input type="checkbox"/> 2호 이상 임대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input type="checkbox"/>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신 설〉 ② 매입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input type="checkbox"/>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임대료 증액 제한 예외 신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 5% 초과 가능 *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49④)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 5% 초과 가능 *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49④)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05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 보유법인 관련 제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사업자 ○ 공익법인 등 ○ 주택법 상 주택조합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 민간건설임대사업자* <p style="margin-left: 40px;">* 민간건설임대주택, 재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 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상 설립 목적이 ①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또는 ②주거지원필요계층등에 대한 주거지원 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종중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전 준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배 영 섭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 태 훈

◎ 문의사항 : ☎ (044) 204-3117~19

■ 차례 ■ 부가가치세법

0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181
02.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182
03.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183
0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	184
0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185
06.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186
07.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187
08.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188
09.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	189
10.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190
11.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추가	191
12.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	192
13.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3
14.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194
15.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195
16.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6
17.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	197
18.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198
19.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규정	199
20.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200
21.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201
22.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202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203

2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4
2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205
2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	206
27.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207
28.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208
29.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	209
30. 지방소비세율 인상	210
31.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	211
32. 납세보전 및 조사를 위한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12

✦ 올 부가가치세법

📖: 주요 개정 내용

-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요건 완화
-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법 적용 예외 신설
 - 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다르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가계의 가사·육아등 비용지원
-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사 형태별 형평성 제고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8577호) : 2021.12.08.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49호) : 2022.2.17.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000호) : 2022.3. . 공포

0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2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3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 시 ○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및 ②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 (좌 동) ○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input type="checkbox"/>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input type="checkbox"/>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명확히 하여 매입자의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input type="checkbox"/>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input type="checkbox"/> 발급 사유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07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가. 개정취지

-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 (원칙) 신탁재산별 사업자 등록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규정 신설 ○ (좌 동) ○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08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개인목적 등으로 사용·소비 등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다음의 경우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② 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09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 <input type="checkbox"/> (원칙) 수탁자 <input type="checkbox"/> (예외) 위탁자 <추 가>	<input type="checkbox"/> 예외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위탁자 지위이전시 납세의무자 : 기존 위탁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0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시가 과세 <input type="checkbox"/>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요건) -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 <input type="checkbox"/>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 신탁 관련 과세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 <input type="checkbox"/> (원칙) 수탁자 <input type="checkbox"/> (예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 - 부동산개발 관련 신탁에서 수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수탁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추 가>	<input type="checkbox"/> 위탁자 과세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좌 동) -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input type="checkbox"/> 국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업종에 따른 용역 - 상품중개업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 업종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좌 동)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가. 개정취지

- 장사 형태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사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지 분양 및 관리용역 ○ 봉안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 ○ 화장 및 화장시설 관리용역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대상 추가 ○ (좌 동) ○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추가 ○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가. 개정취지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가계의 가사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 국선번호·대리,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 보조건 훈련 용역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대상 추가 ○ (좌 동)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p>*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6.16.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익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저작권 신탁관리 용역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대상 추가 ○ (좌 동) ○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수령 관련 용역 <p>*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의2)

가. 개정취지

-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희귀병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 <추 가> <추 가> <추 가>	<input type="checkbox"/> 면제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면제 대상 희귀병 추가 - (좌 동) - 전신 중증 근무력증 -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 신경섬유종증 1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 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input type="checkbox"/> 안분계산 예외 신설
<input type="checkbox"/>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①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②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표준인증을 받고 사전등록 <input type="checkbox"/> 거짓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이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서나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는 착오, 경미한 과실 ○ 수입신고 수리전 수정신고·경정 등의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오, 경미한 과실 구체화 * 관세청 지침 상향 입법 ○ (좌 동) ○ 거래조건, 회계처리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일시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나머지 수입신고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세법상 가산요소*를 더하지 않은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 기대가 어려운 경우 * 수수료, 중개료, 포장용기, 포장노무비, 특허권, 상표권 등 ○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상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해야하는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 기대가 어려운 경우 * 동종·동질, 유사물품 가격 사용,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출 등 ** 해당 물품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거래인 경우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21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산물·수산물 등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 : 8/108 → 9/109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과표 × 30~50% → 과표 × 40~65%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22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세원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결제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1.0% → 1.3%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023.12.31.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가. 개정취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12.23.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억원 → 1억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6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 과세기간 중간(4·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미리 고지·납부 ** 예정고지 제외 시 확정신고(1·7월)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 <input type="checkbox"/>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 <div style="text-align: center;">〈추 가〉</div>	<input type="checkbox"/> 제외 사유 확대 <input type="checkbox"/>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의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 사업의 부도·도산 우려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별지 제37호의3)

가. 개정취지

-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 (사업자등록·신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div style="text-align: center;">〈신 설〉</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규정 ○ (좌 등) ○ (자료보관)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전자적용역의 종류 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③ 용역제공일자 ④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 해당여부 등 ○ (자료제출)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별지제37호의3서식 또는 원본데이터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별지제37호의3서식 또는 원본데이터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7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0항)

가. 개정취지

-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효율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input type="checkbox"/> (등록 대상)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국외사업자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input type="checkbox"/> (등록 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직권 말소 근거 규정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등록 말소)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 정당한 이유없이 2과세기간 이상 부가가치세 미신고, 웹사이트 폐쇄 등 사실상 폐업한 경우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시행

28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무제출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 ○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의무제출대상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의 정의는 「법인세법」 §94의2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29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대 상)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추 가>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액)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 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input type="checkbox"/> 대상 추가 - (좌 동)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input type="checkbox"/>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0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2021.7.28)’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액 × 21%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비세율 연차적으로 인상(+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1.0% → 23.7%(+2.7%p) ○ (2023년~) 23.7% → 25.3%(+1.6%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31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

(부가가치세법 제75조)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판매·결제 대행(중개)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input type="checkbox"/> (대상) 통신판매 중개(대행)업자, 결제 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input type="checkbox"/> (제출자료) 월별 판매·결제 거래 명세 <input type="checkbox"/> (제출시기)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까지	<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기한 단축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달 15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판매·결제 대행하는 분부터 적용

32

납세보전 및 조사를 위한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별표)

가. 개정취지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p>※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세청 훈령인 “세법상 과태료 양정 규정”으로 규정</p>	<p>□ 과태료 부과기준</p> <p>① 관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수입금액에 따라 500~2,000만원</p> <p>② 다음 각목의 위반행위는 별도 기준 적용(①미적용)</p> <p>가.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500만원</p> <p>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500만원</p> <p>다.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위반횟수에 따라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금액의 8/100~24/100</p> <p>③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감경</p>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제조사관 김 현 석

☎ 문의사항 : ☎ (044) 204-3112~3

■ 차례 ■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0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15

0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16

0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외국인 우수 기술인력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02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023.12.31.

0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가. 개정취지

-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023.12.31.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근로장려세제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광 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박 선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고 성 희

☎ 문의사항 : ☎ (044) 204-3122~4

■ 차례 ■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근로장려세제 분야)

01.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220
0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21
0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22
04.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3
05.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	224
06.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등	225
07.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227
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27
②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228
③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229
④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230
⑤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232
⑥ 가구 내 중복신청 시 신청자 판정기준 합리화	233
⑦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	234
08.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신설	235
09.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등	236
10.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37
1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238
12.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39
13.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	240
14.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241
15.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42
16.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243

17.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244
18. 우리스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	245
1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246
20. 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및 ISA의 증도해지 규정 합리화 ...	247
2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	248

01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법 §85의2, 법인세법 §72)</p> <p>※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 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환급</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p> <p>○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p> <p>-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소득세·법인세)에서 먼저 공제</p> <p>○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p> <p>① - [② × ③]</p> <p>①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출세액</p> <p>②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p> <p>*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 모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전 과세연도부터 결손금 공제</p> <p>③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p> <p>○ (신청기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p> <p>○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p> <p>○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2.31.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0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 이익 비과세 ② (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 (적용기간)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임직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① (비과세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3천만원 → 5천만원 ② (분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 20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0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가. 개정취지

-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2.31.

04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가. 개정취지

-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05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가. 개정취지

- 세제지원 실효성 미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부동산임대수입이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 (요건)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을 영업 목적으로 임대 - 동일 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 -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 ○ (감면) 5년 초과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5% 감면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06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3)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 20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 (임차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기본법」 §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20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② 사행성 업종·과세유형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③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④ 사업자등록을 한 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 요건(①) 합리화 ① 20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②~④ (좌 동) -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전 ①~④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 (적용기한) 2020.12.31. ~ 2021.12.31.	○ 2020.12.31. ~ 2022.12.31.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p> <p>① - ②</p> <p>① 임대료 인하 직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산된 임대료*</p> <p>* 2020.1.1.~2021.12.31.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 2021.12.31.까지는 갱신된 임대료</p> <p>② 임대료 인하 이후 실제 임대인의 수입 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p>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계산방법 보완</p> <p>○ (좌 동)</p> <p>* 2020.1.1.~2022.12.31.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 2022.12.31.까지는 갱신된 임대료</p> <p>○ (좌 동)</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00조의5)

가. 개정취지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input type="checkbox"/>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만 원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가구	3,000만 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7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②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00조의8)

가. 개정취지

-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지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분) 같은 해 12월 -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 상반기분 및 하반기분은 각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 (정산*) 다음 해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 근로장려금 既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시기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다음 해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근로장려금 既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07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③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 <추 가>	<input type="checkbox"/> 지급제외 대상에 고임금 근로자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07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④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업종별 경비율·부가가치율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정률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조정률 조정	
구 분	조정률	구 분	조정률
도매업	20%	도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 밖의 업종	30%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형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고급·유형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업	60%

종 전		개 정	
구 분	조정률	구 분	조정률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9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75%
		현행 동일	9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 부터 적용

07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⑤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가. 개정취지

- 직계존비속간 주택·오피스텔 임차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가구원*의 범위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및 부양자녀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택·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55%(국세청 고시)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 <input type="checkbox"/> (좌 동) <li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삭제〉 <input type="checkbox"/>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07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⑥ 가구 내 중복신청 시 신청자 판정기준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4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장려금 신청자 우선순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 판정 기준 *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input type="checkbox"/> 정기신청자와 기한후신청자 → 정기신청자를 우선 인정 <추 가>	<input type="checkbox"/> 반기 신청한 거주자를 기한후 신청한 거주자보다 우선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반기신청자와 기한후신청자 → 반기신청자를 우선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7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⑦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제2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및 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 <input type="checkbox"/> 세무서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을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사실 통지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신청·결정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 통지 생략* <small>* 환급통지로 같음</small>	<input type="checkbox"/>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도입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다음의 경우 전자송달(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통지 ❶ 신청자가 전자송달 신청 ❷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일치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8.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08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9)

가. 개정취지

-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매년→매월) 등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신설 ○ (공제금액)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인원으로 한정 ○ (공제한도) 사업자별 연간 200만원 ○ (적용기한) 2023.12.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09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6)

가. 개정취지

-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유인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뉴딜 인프라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소득 9% 분리과세 ○ (특례대상) 적용기한까지 지급받는 배당 소득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대상*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 * ①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 <li style="padding-left: 20px;">② 뉴딜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li style="padding-left: 20px;">③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자산 -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로 가입 - 계약기간 1년 이상 ○ (투자한도) 2억원 ○ (적용기한) 202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가입 후 5년간 과세특례 적용 ○ 적용기한까지 가입 시,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 2023년부터 펀드의 환매·양도이익 등은 금융 투자소득으로 과세 ○ (좌 등)

10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small>*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small> <input type="checkbox"/> (공제액)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 (교육비) 교육비의 15% - (월세) 월세액의 10%(성실사업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 만원 이하인 경우 12%)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023.12.31.

1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가. 개정취지

-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input type="checkbox"/> (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0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일까지 가입분	<input type="checkbox"/>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소득요건 완화 - (좌 동)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원 이하 * (좌 동) <input type="checkbox"/> 2023.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12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상업용부동산 등 간접투자 활성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요건)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등에 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input type="checkbox"/> (특례) 3년간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input type="checkbox"/> (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투자 후 3년 미만 보유 시 감면세액 추징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일까지 투자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좌 동)</div> <input type="checkbox"/> 2023.12.31일까지 투자분

13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가. 개정취지

- 새롭게 도입된 조세특례에 대한 관리·점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 (제출의무자) 특례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저축지원 특례 ○ (제출자료) 저축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 체결·해지·권리이전 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세금우대저축 자료를 제출하는 특례상품 추가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희망적금, 뉴딜 인프라펀드, 투융자펀드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4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대상)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기간) 3년 이상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font-size: 2em;">}</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차감 ○ (비과세)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형·농민형 400만원 ○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 내 주식·펀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대상) ①주권상장법인 주식 또는 ②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② 합계액 > 0 : 합계액 비과세 * ①+② 소득 합계액 < 0 : 합계액을 ISA 금융투자소득에 합산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분 제외, 기본공제 미적용 ** ISA 내 발생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 (외부 금투소득과는 통산 안함) <p style="font-size: 2em;">}</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15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가. 개정취지

- 장병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small>*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small> <small>**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small> <input type="checkbox"/>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 (최대 24개월) <input type="checkbox"/> (적립한도) 월 40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일까지 가입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023.12.31일까지 가입분

16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6 신설)

가. 개정취지

- 청년층의 증장기 자산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③계약기간 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 ○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 (적용기한) 2023.12.31일까지 가입분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7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7 신설)

가. 개정취지

-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③계약기간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 ○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연 납입액 600만원 ○ (추징) 가입 후 2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 (적용기한) 2022.12.31일까지 가입하여 2024.12.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가. 개정취지

- 우리사주 조합원 자사주에 대한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우리사주조합 자사주 예탁 시 통보 의무 <input type="checkbox"/>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시 통보 <small>*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small>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을 통보	<input type="checkbox"/> 주식통보 의무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우리사주조합원이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내역이 당초 통보한 과세대상주식 해당 여부와 차이가 있는 경우 재통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1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실명 확인방식 추가 ○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0

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및 ISA의 중도해지 규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1항, 제24조의2, 제93조의4 제14항)

가. 개정취지

- 중도해지 사유를 보완하여 과도한 감면세액 추징 방지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뉴딜·공모 인프라 펀드, ISA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계약기간 전 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추징하지 않음 ※ (최소 계약기간) : 3년(ISA), 1년(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 다음의 사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도해지 사유 보완 ○ (좌 동) ○ 계약기간 만료일 → 해지일 <li style="margin-left: 20px;">(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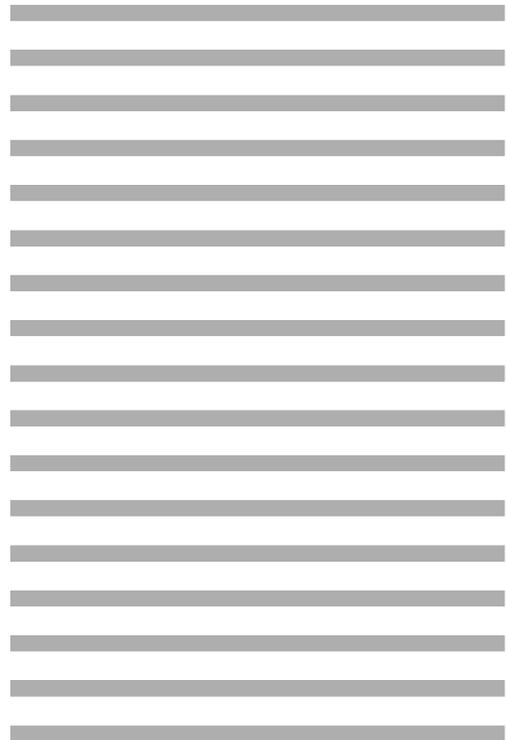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 (특례 대상)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장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특례 대상 확대 ○ 대체복무요원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복무요원* <p style="font-size: small; margin-left: 20px;">*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공익분야에서 3년간 합숙 복무하는 요원</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최 영 훈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남 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박 재 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채 린

☎ 문의사항 : ☎ (044) 204-3137~41

■ 차례 ■ 조세특례제한법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0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 251

02.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252

 ① 펀드 조세특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합산 과세 선택 허용 252

 ②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절차 신설 253

03.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 254

0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6조의5)

가. 개정취지

- 2023년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 특례 ○ 행사이익 과세방법(①, ②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②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li style="padding-left: 40px;">*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 과세특례 ○ 현물출자 이익 과세방법(①, ②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②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li style="padding-left: 40px;">*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소득세로 명칭 변경 및 기본공제 적용 배제 <li style="padding-left: 20px;">(좌 등) ②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li style="padding-left: 40px;">*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 금융투자소득세로 명칭 변경 및 기본공제 적용 배제 <li style="padding-left: 20px;">(좌 등) ②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li style="padding-left: 40px;">*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① 펀드 조세특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합산 과세 선택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9 등)

가. 개정취지

- 20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펀드 조세특례 ○ 배당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종합저축(§88의2) - 재형저축(§91의14) - 해외주식전용펀드(§91의17) ○ 배당소득 분리과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리과세 세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뉴딜펀드(§26의2), 공모부동산펀드(§87의7), 세금우대종합저축(§8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d>투융자펀드(§27)</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저축지원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 ○ 이자·배당소득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특법 §87③, §87의2, §87의7, §88의2, §88의4, §88의5, §89의3, §91의18, §91의19 	분리과세 세율	특례	9%	뉴딜펀드(§26의2), 공모부동산펀드(§87의7), 세금우대종합저축(§89)	14%	투융자펀드(§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조세특례 적용 ○ 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 <li style="margin-left: 20px;">(좌 동) ○ 배당·금융투자소득 분리과세 <li style="margin-left: 20px;">(좌 동) <li style="margin-left: 20px;">- 단, 금융투자소득 합산 과세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시보다 세액이 적은 경우 합산 과세 선택 허용(확정신고 시)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에도 적용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분리과세 세율	특례						
9%	뉴딜펀드(§26의2), 공모부동산펀드(§87의7), 세금우대종합저축(§89)						
14%	투융자펀드(§27)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②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절차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4항, 제24조의2 제6항, 제81조의4 제5항 등)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절차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조세특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전용펀드, 뉴딜펀드, 공모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

03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가. 개정취지

- 20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해 거래 시 과세특례 ○ (대상)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해 거래 되는 상장주식 ○ (특례) 증권시장 내 거래와 동일하게 보아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및 농어촌특별세율 적용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p>* 대주주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소득세 명칭 변경 및 상장주식 기본공제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주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p>*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5천만원) 적용</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최 영 훈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한 정 수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 남 구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박 재 호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 채 린

☎ 문의사항 : ☎ (044) 204-3137~41

■ 차례 ■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0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	257
02.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58
03.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명확화	259
0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260

0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내용)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단, 부여 당시 시가보다 행사가액이 낮은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은 제외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 적용범위 확대 등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이하 발행이익 = 부여 시 시가 - 행사가액 ○ 20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 * 자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021.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02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가. 개정취지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특례내용)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과 주식 교환 시,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이연 ○ ‘벤처기업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벤처기업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 아래의 기술우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성 우수 평가받은 기업 • 기술등급 상위 50% 해당 기업 •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투자 기업 ○ 20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03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직·간접으로 벤처기업 등에 출자 후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특례 대상)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법」 (§2①)상 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벤처기업 으로 확인*받은 기업 *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임을 확인

0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9,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가. 개정취지

-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 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소득세법 준용하여 안분계산 ○ (사후관리)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신청 절차)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 양수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3.16.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차례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65
0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66
03.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	267
0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68
05.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69
06.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270
07.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271
0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272
09.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73
10.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274
1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275
12.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276
13.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277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	278
①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278
②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279
③ 근로자 소득 판단 기준 명확화	280
15.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281
16.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	282
17.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	283
18.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84
19.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285
20.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	286

2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	287
22.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88
23.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89
2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용 특례 적용기한 종료	290
25.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	291
26.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292
27.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93
28.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	294
29.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295
①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295
②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296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등	297
④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규정	298
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299
30.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	300
31.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301
32.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302
①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02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	303
33.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04
3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305
35.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306
36.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	307
37.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308
38.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309

39.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10
4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311
41.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312
42.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314
①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	314
②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315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316
④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317
4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18
44. 금·스크랩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19
45.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320
46.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 시 이자율 인하	321

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가. 개정취지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보건의료기술법」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① 「벤처기업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②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0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0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

가. 개정취지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보건의료기술법」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등 <추 가> ○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취득(또는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후단 신설> ○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벤처기업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②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추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li style="margin-left: 20px;">(좌 동)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 현재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 (좌동),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피인수법인 지분 최초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벤처기업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②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 취득일별 순자산시가를 해당 날짜에 취득한 지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 20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03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가. 개정취지

- 가속상각특례의 한시적 운용 필요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 : 사업용 고정자산 ②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신성장사업화시설, 연구·시험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0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가. 개정취지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 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 요건(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 자산 취득 ○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2023.12.31.

06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지주회사 전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 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input type="checkbox"/> (~2021.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 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input type="checkbox"/> (2022.1.1.~2024.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2023.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 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input type="checkbox"/> (2024.1.1.~2026.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07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가. 개정취지

- 실효성 미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0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가. 개정취지

- 실효성 미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정업종*의 법인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09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가. 개정취지

- 선제적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 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 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input type="checkbox"/> 인수한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2023.12.31.

10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가. 개정취지

- 실효성 미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미입주 상태)하여 임대 시 100%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으로 85㎡ 이하 :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8년간 - 위 외의 주택으로 149㎡ 이하 :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5년간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1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가. 개정취지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 *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2023.12.31.

12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가. 개정취지

- 도시 - 농어촌간 소득격차 개선 및 농어민 소득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법인세 감면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5px;">}</div> <div>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div> <input type="checkbox"/> 2023.12.31.

13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가. 개정취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과 다른 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동업자) 동업자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가액 초과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배분 ○ (수동적 동업자) 결손금 배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배분받을 소득금액 발생 시 소득금액에서 10년간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 배분·공제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 → 15년간 - 10년간 → 15년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

①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5항·제6항)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소득 × 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 20% Ⓑ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 + 상생)] × 20% ※ 가중치 :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환류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2년 ○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1년 ○ (적용기한) 202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li style="text-align: center;">(좌 동) ○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 1년 → 2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 ②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가. 개정취지

-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20% 세율로 추가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이월결손금 등 ○ 기업소득 차감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한도 적용(「법인세법」 제13조제1항)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소득 차감항목 명확화 (좌 동)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결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한도 미적용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

③ 근로자 소득 판단 기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환류대상인 임금증가액 적용 대상 근로자 소득금액 판단 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환류대상인 임금증가액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연간 총급여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소득 환산 규정 신설 ○ (좌 동)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판단

15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가. 개정취지

- 실효성 미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자본확충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산은·수은의 후순위 채권 등에 투자 ○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5년 후 환입(익금산입)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 (좌 동)

16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가. 개정취지

- 정비사업 수행 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조합원분양분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 ○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비수익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및 비수익사업 추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추가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

17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가. 개정취지

- 정책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 산입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산입 * 금융기관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손금 산입 특례는 삭제 <input type="checkbox"/> 20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18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가. 개정취지

-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익금산입)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2023.12.31.

19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0)

가. 개정취지

- 스포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제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등 비용 **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 (지원대상)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지정된 40여개 종목의 운동경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 종목은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경기부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이스포츠경기부 창단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지원대상)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이스포츠경기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가. 개정취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포기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 (취소사유) 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 위반 등 - 시공사 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 (취소사유)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 (좌 등) <li style="text-align: center;">(좌 등) ○ 20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9.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

2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가. 개정취지

- 공적자금 조기상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수협중앙회가 다음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으로 간주 ○ 수협중앙회가 수협 회원에게 배당한 금액 ○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적자금 일시상환 시 균등상환 의제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2023~2028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

22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0,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가. 개정취지

-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대상) 금융채무 상환계획*이 포함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할 금융채무 총액 및 내용, 상환계획 (3개월 이내 상환),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 ÷ (양도가액) ○ (사후관리) 다음 요건 해당 시 과세이연된 차익의 일정금액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②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증가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사업의 해산·폐업 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이연 대상 확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투자계획*이 포함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할 자산 총액 및 내용, 투자계획(1년 이내 투자),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중 투자사용액) ÷ (양도가액)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은 경우 ②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에(공동 사업재편의 경우 1년) 부채비율이 증가한 경우 ③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④ (좌 동) ○ (적용기한) 2023.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23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제121조의28, 제121조의29, 제121조의30, 제121조의31,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p> <p>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p> <p>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p> <p>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p> <p>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p> <p>⑥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p> <p>○ (적용기한) 2021.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p>○ 2023.12.31.</p>

2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가. 개정취지

- 구조조정 시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특례 <input type="checkbox"/> 합병대가 중 주식교부비율 70%* 이상 * 일반 합병의 경우 80%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25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가. 개정취지

- 해운기업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신고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표준이익 = $\Sigma(\text{개별선박의 순톤수} \times \text{1톤당1운항일 이익} \times \text{운항일수} \times \text{사용률})$ ○ (사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한 선박) 100% - (용선한 선박)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 비율 -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 공동운항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운항선박에 대한 사용률 기준 개선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선 또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은 실제 적재량을 해당 선박의 적재능력*으로 나눈 비율 * 선박의 최대 적재량 또는 컨테이너선은 설계적재능력의 7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전에 용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로서 2022.2.15.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26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

가. 개정취지

- 우수 중소 선화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 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해수부의 우수선화주기업 인증대상이 되는 국제물류주 선업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 (공제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비용의 1%(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추가) 세액공제 -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수출·수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완화 ○ 전년도 매출액이 있는 기업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좌 동)</div>

27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가. 개정취지

-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input type="checkbox"/>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좌 동)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内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5년 50%*				
에너지기술 중소기업	5년 50%*				
창업 보육센터	5년 50%*				
* 신성장 서비스업 : 3년 75% 2년 50%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8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가. 개정취지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 (요건) ❶과 ❷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 수단 ❷ 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 (공제율) 2단계 구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기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 제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일 이내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60일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1%</td> </tr> </tbody> </table>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 (좌 동) ○ 요건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기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 제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일 이내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30일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1~60일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15%</td> </tr> </tbody> </table> ○ (적용기한) 2022.12.31. ○ (좌 동)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9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①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가. 개정취지

-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방식) 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②통합투자세액공제 ○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 (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R&D 비용(%)</th>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2</td> <td>8</td> <td>25</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 colspan="2">20~30</td> <td>30~4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시설투자(%)</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3</td> <td>10</td> <td rowspan="2">3</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5</td> <td>12</td> </tr> </tbody> </table>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 투자 세제지원 강화 ○ (좌 동) ○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p style="text-align: center;">*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2024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R&D 비용(%)</th>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2</td> <td>8</td> <td>25</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 colspan="2">20~30</td> <td>30~40</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 colspan="2">30~40</td> <td>40~5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시설투자(%)</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3</td> <td>10</td> <td rowspan="3">3</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5</td> <td>12</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6</td> <td>8</td> <td>16</td> </tr> </tbody> </table>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20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29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②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가. 개정취지

-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 ○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29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7항·제12항)

가. 개정취지

-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체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R&D 전담 연구원 등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전담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인건비 -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② (위탁·공동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탁비용 또는 이들 기관과 공동연구개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비용의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 안분 계산 ○ ①신성장·원천기술 R&D, ②일반R&D 각각 구분경리 ○ 신성장R&D와 일반R&D에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p>* 공통비용 중 인건비, 위탁·공동연구개발비는 일반R&D비용으로 간주, 재료비는 인건비 비중으로 안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 안분 계산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R&D 추가 ○ ①신성장·원천기술 R&D, ②국가전략기술 R&D, ③일반R&D 각각 구분경리 ○ 신성장R&D, 국가전략기술 R&D, 일반 R&D에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p>* 안분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29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④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정의 <input type="checkbox"/>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2021년 세법개정안」(2021.7.26.)에서 既 발표 : 총 31개 시설(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29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4항·제5항·제10항·제11항·제14항)

가. 개정취지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병행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병행생산 시) 사후관리*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부터 일정기간 내(건물·건축물 5년, 그 외 2년) 다른 목적 전용시 공제세액 납부 ○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사후관리 기준)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누적 생산량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轉用)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4.1. 이전 투자한 경우에는 2022.4.1.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i)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frac{\text{해당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생산량}}{\text{해당시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frac{50}{> 100}$ </td> </tr> </table> <p>ii)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 :</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frac{\text{해당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생산량}}{\text{해당시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frac{50}{> 100}$ </td> </tr>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시 납부세액) 공제세액 상당액(차액*) + 이자상당액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세액 - 일반시설 공제세액 ○ (자료제출) 생산량*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대상, 측정기간,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frac{\text{해당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생산량}}{\text{해당시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frac{50}{> 100}$	$\frac{\text{해당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생산량}}{\text{해당시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frac{50}{> 100}$
$\frac{\text{해당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생산량}}{\text{해당시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frac{50}{> 100}$				
$\frac{\text{해당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생산량}}{\text{해당시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frac{50}{> 1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새로 투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또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부터 적용

30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가. 개정취지

-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input type="checkbox"/> 12대 분야* 235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신 설> <추 가> -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 압축기 기술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13대 분야* 260개 기술 * ⑬'탄소중립' 분야 신설 - (탄소중립)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CCUS(7)</td> <td>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수소(8)</td> <td>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신재생E(12)</td> <td>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산업공정(11)</td> <td>수소환원제철 기술 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E효율·수송(10)</td> <td>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td> </tr> </table> -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 순환 등 기술 8개 *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 파우드리 기술, 중회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 포함 • (게임) 실시간 데이터 활용 시청각화 포함 •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포함 </div> <삭 제> <input type="checkbox"/>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한 설정 : 선정일 부터 최대 3년	CCUS(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11)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CCUS(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11)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1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5항)

가. 개정취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심의·평가 체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명칭 <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로 명칭 변경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성장·원천기술 신규기술 도입 및 현행 기술 존치여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2항에 따라 설치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5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 봄

32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①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가. 개정취지

-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input type="radio"/> (감면율) 특허권등 기술이전 소득의 50% 세액감면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input type="radio"/> 2023.12.31.
<input type="checkbox"/>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중소기업 <input type="radio"/> (감면율) 특허권등 기술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radio"/> 중견기업 추가 (좌 동) <input type="radio"/> 2023.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2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가. 개정취지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분 기본공제 ㉠ + 증가분 추가공제 ㉡ ㉠ : 중소 10% / 중견 3% / 대1% ㉡ : 직전3년 평균 대비 증가분 3% ○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 - 기타 사업용 자산* * 운수업 차량·운반구, 건설업 기계·장비, 중소기업이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산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33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 특수관계인, 총급여 7천만원 이상자 제외 ○ (경영성과급 요건) ❶ + ❷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❷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근로자) 경영성과급의 50% 세액감면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좌 동) 〈삭 제〉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세액공제 - (좌 동) ○ 20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3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0)

가. 개정취지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2.12.31.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35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가. 개정취지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 <input type="checkbox"/> (공제액)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2.12.31.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 (좌 동)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36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가. 개정취지

- 최근 3년간('19~'21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적용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10%, 중소 20%) ○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율이 3.8%*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준 조정 ○ 3.8% → 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7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가. 개정취지

-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대 세액공제 ○ (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 (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중소</th> <th rowspan="2">중견</th> <th rowspan="2">대</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청년·장애인 등</td> <td>1,100</td> <td>1,200</td> <td>800</td> <td>400</td> </tr> <tr> <td>기 타</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 세액 추징 ○ (적용기한) 2021.12.31. 	구 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기 타	700	770	4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까지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공제 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중소</th> <th colspan="2">중견</th> <th colspan="2">대</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수도권</th> <th>지방</th>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청년·장애인 등</td> <td>1,100</td> <td>1,300*</td> <td>800</td> <td>900*</td> <td>400</td> <td>500*</td> </tr> <tr> <td>기 타</td> <td>700</td> <td>770</td> <td>450</td> <td>45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2021~20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p>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12.31. 	구 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 타	700	770	450	450	-	-
구 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기 타	700	770	450	-																																									
구 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 타	700	770	450	450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부터 적용

38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가. 개정취지

-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요건) 20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단서 신설> ○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좌 동) ○ 요건 정비 (㉠, ㉡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 제외 ○ (좌 동) ○ 202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39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가. 개정취지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 (공제금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감소액 × 10% ㉡ 임금보전액* × 15%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li style="margin-left: 20px;">○ (좌 동) ○ 2023.12.31.

4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개정취지

-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 ○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 (공제금액)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 공제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청년·경력 단절여성</th> <th>신성장 서비스업</th> <th>기 타</th> </tr> </thead> <tbody> <tr> <td>공제율</td> <td>100%</td> <td>75%</td> <td>50%</td> </tr> </tbody> </table> ○ (공제기간) 2년 ○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 (적용기한) 2021.12.31. 	구분	청년·경력 단절여성	신성장 서비스업	기 타	공제율	100%	75%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 2024.12.31.
구분	청년·경력 단절여성	신성장 서비스업	기 타						
공제율	100%	75%	5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41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가. 개정취지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❶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 ❷ 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투자·근무인원 요건 규정 ○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요건 규정 <p style="margin-left: 20px;">(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❸ 이전본사 투자금액 10억원 + 근무인원 20명 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판단 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투자 금액</td> <td>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근무 인원</td> <td>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감면적용 이후 근무인원 기준 미달 시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p>	구분	판단기준	투자 금액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근무 인원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
구분	판단기준						
투자 금액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근무 인원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름
-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1.12.31.까지 보유하고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름

42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②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64조,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가. 개정취지

- 투자유치 효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대상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지역 특구 등 9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특구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기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100% + 2년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100% + 2년 5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 설〉</p>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 + 2년 50%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5년 50%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3년 100% + 2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규정 신설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 납부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폐업·해산 3년, 이전 5년)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 + 2년 50%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5년 50%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3년 100% + 2년 5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 분부터 적용

42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가. 개정취지

-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등 ○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의료기관 등 - 첨단기술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전기·정보·신물질·생명공학 분야 -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정 - 연구개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기술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첨단기술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전 분야 -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제한 삭제(단, 수산·과실·낙농·비알콜음료 제조업 등 업종 한정) - 연구개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기술, 첨단기술·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 관련 - 화장품제조업
<p><추 가></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42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④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가. 개정취지

- 실효성이 미흡한 비과세·감면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제주자유무역지역 세액감면 ○ (감면대상) 제주자유무역지역 특구 입주기업 ○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4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1)

가. 개정취지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① 또는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②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3년간 100% + 2년간 50%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동) ②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좌 동) ○ 20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44

금·스크랩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가. 개정취지

- 금·스크랩사업자 소득 양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 (공제액) ①, ② 중 큰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출세액 × $\frac{1}{2}$ × $\frac{\text{매입자 납부수익금·손금}^* \text{ 증가}}{\text{전체익금·손금}}$ ② 산출세액 × $\frac{\text{매입자 납부수익금·손금}^* \text{의 5\%}}{\text{전체익금·손금}}$ *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 받은 익금·손금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023.12.31.

45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가. 개정취지

- 공사부담금 과세이연 혜택과 중복지원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투자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투자한 금액 <input type="checkbox"/> 국가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투자하는 경우 이차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 *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46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 시 이자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가. 개정취지

- 납세자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이자상당 가산액 등 계산*시 이자율 * (예)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input type="checkbox"/> 1일 0.025%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인하 <input type="checkbox"/> 1일 0.02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

■ 차례 ■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0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325
02.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26
03.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27
04.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28
05.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29
06.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30
07.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31
08.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332
0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	333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확대	334
1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35
1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336
13.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	337
14.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338
15.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39
16.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0
17. 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341
18.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범위 명확화	342
19. 농협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범위 조정	343
20.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344
21.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인하	345
22. 농·임·어업용 면세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	346
23.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347

0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가. 개정취지

- 정비사업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 (재화공급특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 적용대상 조합 추가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가로주택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2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 (적용기한)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023.12.31.

03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가. 개정취지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input type="checkbox"/>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023.12.31.

04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학생, 공장·광산 등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급식용역 <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023.12.31.

05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이 제공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2023.12.31.

06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2023.12.31.

07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2023.12.31.

08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3호)

가. 개정취지

- 고령층 노후생활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연금 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주택연금)을 대출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담보로 공적 보증 ○ (주택연금 유형) 신탁방식* 주택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수탁받아 관리·처분하는 방식 ○ (적용대상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가 주택연금 보증채무 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 무연탄,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 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적용기한) 2024.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가. 개정취지

- 상수도 관련 기관간 업무조정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면제사업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2호 및 「수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의 개량·관리·정비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사업 범위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가. 개정취지

-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2023.12.31.

1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가. 개정취지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input type="checkbox"/> (경감율) 99% * 경감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 (90%), 택시감차보상재원(5%), 복지기금재원 (4%)으로 활용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023.12.31.

13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input type="checkbox"/> (대상업종) 유흥·단란주점업 <input type="checkbox"/>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input type="checkbox"/>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 <input type="checkbox"/>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삭제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14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가. 개정취지

-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공제율(3/103)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2023.12.31.

15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제10항, 같은 법 제121조의25 제8항)

가. 개정취지

- 농·어업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농협) - 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 <input type="checkbox"/> (수협) - 수협중앙회 → 수협은행에 공급 - 수협은행 → 조합·중앙회에 공급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023.12.31.

16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5 제7항)

가. 개정취지

- 어업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 사용용역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023.12.31.

17

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가. 개정취지

- 농어민·창업중소기업 및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인지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용자서류, 예·적금 증서 및 통장 - 창업중소기업 용자서류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 (좌 동)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2023.12.31.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작성 서류 : 2024.12.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8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범위 명확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가. 개정취지

-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의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input type="checkbox"/>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국산 농약 - 저곡해충약,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농약 범위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국산 → 국산 또는 수입 농약 - (좌 등)

19

농협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범위 조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1의2호)

가. 개정취지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협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포함)	<input type="checkbox"/> 환급기자재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input type="checkbox"/> 농업용 무인항공기* * 무인항공기 = 무인헬리콥터 + 무인멀티콥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 별표6)

가. 개정취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후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input type="checkbox"/>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62종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농업용 배추망·양배추망
<input type="checkbox"/> 사후환급 적용 어업용 기자재 <input type="checkbox"/> 양어장용 필름·파이프 등 33종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구멍뗂목·구멍정·구멍부환(어선용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1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인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관련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input type="checkbox"/> 1일 0.025%(연 9.125%)	<input type="checkbox"/>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인하 <input type="checkbox"/> 1일 0.022%(연 8.0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22

농·임·어업용 면세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1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9조, 별표7)

가. 개정취지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p> <p>※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세청 훈령인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으로 규정</p>	<p><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유통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취득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 ○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중·감경

23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가. 개정취지

- 외국인 관광객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요건 * 현장에서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 ○ (1회 거래가액) 3~50만원 미만 ○ (총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총 거래가액 한도 상향 ○ (좌 동) ○ (총 거래가액) 25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차례 ■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 분야)

01.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일몰연장 및 환급한도 상향 351

01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일몰연장 및 환급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까지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1가구 1경차 소유자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 - LPG·부탄 : 개별소비세 전액 (리터당 161원) <input type="checkbox"/> (한도) 연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환급한도 상향 <input type="checkbox"/> 2년 연장(2023.12.31.까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연 3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분부터 적용

■ 차례 ■ 기타세법

개별소비세법

0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356

02.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 357

03.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358

04. 개별소비세 납세담보금액 합리화 359

05. 외래어로 표현된 과세물품 용어 정비 36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01.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36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01.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 362

02.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 시 수리 의무 등 상향 입법 363

03. 주세 보전명령의 법률상 근거 구체화 364

04.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
계속행위 허용 365

05.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366

06. 국세청 고시의 법률상 위임근거 구체화 367

07. 주류관련 고시 상향 368

08. 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369

주세법

01. 주류 미납세 반출 시 승인 상향 입법 370

02.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 범위 명확화 371

03.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 372

04.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373

증권거래세법

01. 주권 매매 관련 통지사항 확대 374

농어촌특별세법

01. 유가증권시장 증권 양도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규정 명확화 375

02.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정비 376

개별소비세법

0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이증과세 및 과세물품 간 불형평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공제 ○ (사유)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 ○ (요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원재료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예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제 허용 * 설비의 신규·증설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해서만 천연가스 구입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된 원재료인 과세물품분부터 적용

02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

(개별소비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가. 개정취지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기준 ○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범 : 판매(취득)가액의 0.5~1배 - 재범 : 판매(취득)가액의 2~3배 ○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령위반자 위반행위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300만원~1,000만원 ○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감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

03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탄소중립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 기본세율 : (발전용) 12원/kg (발전용 외) 60원/kg ① 다음의 경우 : 8.4원/kg - 열병합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 (적용대상) 집단에너지사업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 <신 설> ② 그 외의 경우 : 42원/kg	<input type="checkbox"/>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인하 ○ (좌 동)] - (좌 동)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 수소제조 설비에 공급하는 경우(액화 천연가스 포함) 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4

개별소비세 납세담보금액 합리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납세담보금액 한도를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주기 (월별)와 일치하여 납세행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세유흥장소 납세담보금액* 최고 한도 * 과세유흥장소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 2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세무당국은 납세담보 제공 요구 가능	<input type="checkbox"/> 납세담보금액 한도 인하
<input type="checkbox"/>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 * 전분기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해당 분기 납부세액 추정액	<input type="checkbox"/> 전월 납부세액*의 120% * 전월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당월 납부세액 추정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분부터 적용

05

외래어로 표현된 과세물품 용어 정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외래어 표기를 쉽고 자연스러운 표준어로 대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세물품의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물품 외래어표기를 일본식표기 등 비표준어로 표기* * 호스시핀나, 투어멀린, 가네트, 부라스톤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표준어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국어대사전, 보석박물관 학명,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로 변경* * 호스 스피너, 투르말린, 가넷, 블러드스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01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37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신 설〉 ※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류의 상표사용·변경 시 신고 의무 ○ (예외) 수입주류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생략 가능, 수출주류는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 생략 가능 <input type="checkbox"/> 몰취한 주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고시에서는 해당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음 ○ (예외)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기 가능 <input type="checkbox"/> 주류제조자·수입업자 및 주류판매업자의 금품 수수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령으로 정하는 주류제공, 시음주, 무상 주류 교환권 등 금품 제공과 유사한 행위도 금지 ○ (예외) 홍보를 위한 소규모 경품(주류도매업자 제외), 주류보관을 위한 내구소비재, 주류 판매에 사용되는 소모품 등은 예외적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몰취한 물품 등의 매각·폐기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몰취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02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 시 수리 의무 등 상향 입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시행령에 규정 중	<input type="checkbox"/> 제조장 등 이전신고의 수리 <input type="checkbox"/> 주류제조자, 주류판매업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의무 <input type="checkbox"/> 수리 여부 미통지 시 수리한 것으로 간주

03

주세 보전명령의 법률상 근거 구체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시행령에 규정 중	□ 주세 보전명령의 구체적 범위 규정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2조,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류 용도의 구분 및 분류(가정용·면세용) 표시 ②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에 관한 사항 ③ 주류 등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 ④ 주류 등의 제조시설 및 설비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⑤ 주류 등의 제조·저장·판매 설비의 사용 등 ⑥ 기타 주류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주세의 보전명령

04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 계속행위 허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가. 개정취지

- 주류 행정의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류 제조·반출정지 및 면허취소 시 계속행위 허용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류의 제조·반출에 대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 〈추 가〉 ○ 허용되는 계속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제품이나 재고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제조·반출 및 판매 가능 * 제조면허취소의 경우는 3개월 이내 ○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류 면허 상속인에 대한 계속행위 허용 ○ (좌 동) ③ 아래 사유로 피상속인 사망 후 주류 제조·반출·판매업을 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이 면허발급제한 사유가 있어 제조·반출·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인이 면허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 (좌 동) * 제조면허취소 또는 상속의 경우는 3개월 이내 ○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상속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계속행위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5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4)

가.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현행 「세법상 과태료 양정 규정」 별표6,7,8(국세청 훈령 제2438호)에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사유 및 부과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세보전명령 위반 : 50만원~2,000만원 - 납세증명표지명령 위반 : 100만원~2,000만원 -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제조한 주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판매)한 경우 : 10만원~2,000만원 - 점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용구를 사용 : 100만원~1,000만원 ○ 과태료 부과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 적용 - 양형기준(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설정 -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명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과태료 부과분부터 적용

06

국세청 고시의 법률상 위임근거 구체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19조, 제42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세 보전명령의 구체적 위임근거 마련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1조) <input type="checkbox"/> 주류 용도(가정용 등)별로 구분하여 반출·판매 <input type="checkbox"/> 주류 표시, 운반, 제조시설 등 필요사항 <input type="checkbox"/>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적용대상, 구체적 관리범위 및 운영 방법 등 관련 위임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병(위스키)에 제품별 고유번호 등이 입력된 RFID 태그를 부착하고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해 모든 거래정보를 국세청 전산서버에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부터 적용

07

주류관련 고시 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41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의 저장·판매시설·설비를 신설·확장시 신고의무 <input type="checkbox"/>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상표사용 신고 절차 및 의무사항 등 <input type="checkbox"/>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 반출 시 신고의무 등 <input type="checkbox"/>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제조자가 자동계수기* 사용 시 점검 및 기록 등 의무 사항 규정 <li style="padding-left: 40px;">* 주류의 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사용 시 납세증지 부착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병마개 등 제조자는 운영난 등으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 시 3개월 전에 통보 <input type="checkbox"/>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금품제공 행위 및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행위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부터 적용

08

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주류제조 규제개선을 통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규모주류제조자* 시설기준 * 제조한 주류를 제조장이나 영업장 등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시설기준 완화
<input type="checkbox"/> 담금·저장·제성용기 설치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캡슐형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예외 허용
<input type="checkbox"/> 시험시설(간이증류기, 주정계) 설치	<input type="checkbox"/>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제조면허 신청분부터 적용

 **주세법**

01 주류 미납세 반출 시 승인 사항 입법
 (주세법 제17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시행령에 규정 중	<input type="checkbox"/> 미납세 주류(수출용, 주류제조용 원료)를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 시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이 승인

02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 범위 명확화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알코올을 함유하나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을 요리용 맛술로 한정하여 조미식품의 범위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 범위 ○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서 풍미 증진용으로 사용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식품의 범위를 요리용 맛술로 명확화 ○ 법 별표 제4호 다목*에 따른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 * [별표] 제4호 다목 : 쌀 및 입국(粒麴 :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 염분, 당분과 같이 가열하여도 증발되지 않고 남는 주류 첨가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3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

(주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종량제 대상 주류 세율 공시 및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 1ℓ 당 834.4원 - (탁주) 1ℓ 당 41.9원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2022년도 종량세율 공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022.4.1.부터 2023.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 1ℓ 당 855.2원(20.8원↑) - (탁주) 1ℓ 당 42.9원(1.0원↑) <p style="text-align: center;">* '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 2.5%</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4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주세법 시행령 별표3)

가. 개정취지

- 과실 첨가량 요건 완화로 소규모 맥주업계 경쟁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요건 <input type="checkbox"/> 맥주재료 합계 중량*의 100분의 20 이하일 것 * 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① 또는 ② 충족시 요건 충족 ① (좌 동) ②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법

01 주권 매매 관련 통지사항 확대
 (증권거래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가. 개정취지

- 과세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주권 매매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월일, 양도자 계좌번호 <추 가>	<input type="checkbox"/> 통지사항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투자자 분류 정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매매거래 체결 분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법

01

유가증권시장 증권 양도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규정 명확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가. 개정취지

- 2023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은 증권거래세가 영(0)의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농특세가 과세되는 점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 양도분 중 농특세 비과세 대상 ○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 주권 양도분의 농특세 비과세 대상 명확화 ○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단, 코스피거래분 제외)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코스피 증권 양도분 포함)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2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정비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4조, 제5조)

가. 개정취지

- 2023년 이후 조특법상 비과세·감면·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대한 농특세 비과세·세율 등 규정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세액면제·세액공제 등 ○ 조특법 상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 취득세 특례세율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이자소득·배당소득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 (좌 동)
<input type="checkbox"/>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특법 상 저축·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40조)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배당 → 저축·배당·금융투자소득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input type="checkbox"/> 농어촌특별세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는 이자·배당 소득의 감면세액: 10%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에 대한 적용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input type="checkbox"/> 감면세액의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소득·배당소득 : (감면 전 소득금액 × 14%) - 납부세액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소득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금융투자소득 : (감면 전 소득금액 × 20%) - 납부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2 개정세법 해설

인 쇄 2022년 3월 일
발 행 2022년 3월 일

발행처 국세청 법규과

-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규과 (☎ 044-204-3103)에 사전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책자는 개정된 세법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 중 개정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 되는 경우에 법령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